==========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사람들 제5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1. 회의 일자 : 2026 년 11 월 17 일(화)
2. 회의 시간 : 11 시 00 분 (개회) ~ 12 시 00 분 (폐회)
3. 회의 장소 :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145번길.101동 1401호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사람들)
4. 출석 임원 : 박석주(대표이사), 곽삼화(이사), 황은희(이사), 이기봉(이사), 정경미(이사)
   박진영(이사), 이상원(이사)
5. 의　　장 : 대표이사
6. 기 록 자 : 이향숙 (사무국장)

【성원 보고】

재적임원 11 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으로 보고하다.

【개회 선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1:00 에 박석주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장으로 개회를 선언 하다.

【전차회의록 채택】

전차회의록의 주요 안건을 확인 후 낭독하고 채택 여부를 묻자 곽삼화 이사가 동의하고, 황은희 이사가 제청하여 전차회의록을 채택하다.

【 안건 1: 정관 변경(수정) 의결 건 】

(1) 안건 개요 : 2025년 아동분야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결과 조치사항 제출에 기인.

- 2025년 아동분야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결과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사람들」정관 일부 규정(제3조,30조,33조)이 부적절하여 정관수정 후 조치 결과 제출 관련하여 "2025년11월10일" 공문이 내려왔으나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아 정관 변경 주무관청인 경기도의 정관 변경 보완지시로 이사회 논의 후 정관 변경을 의결하고자 함.

(2) 법인정관 누락 수정조항 : 정관30조 2항

기존내용	변경내용
제30조② 의사록에는 의상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한다.	제30조(이사회회의록)②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날인** 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3) 의결 내용

대표이사의 법인정관 변경(수정)의 이유를 설명하고 박진영 이사가 동의하고 이기봉 이사가 재청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 사회복지법인은행골사람들 정관제3조, 30조2항, 33조를 변경(수정) 후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인가를 신청할 것
- 첨　부 :1. 2025년 아동분야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제출 공문
  2. 변경 후 정관(최종)사본 1부.

【안건 2 :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허가조건에 따른 사후관리 의결 건】

(1) 안건 개요

- 법인 기본재산인 은행주공아파트 담보제공으로 취득한 현금(보상금)은 장기차입원금 및 이자 상환 외 기본재산 현금으로 편입하여야 함.
-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정관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담보 설정 해지 시에 경기도에 즉시 보고 해야 한다.
- 보상금이 여러 번 나누어 지급되므로 차입금 상환계획 및 상환내역은 세입·세출 예·결산서에 반영하여 주무관청에 매년 제출하고, 아파트 준공 후 상환 완료 시에 경기도에 상환 완료 보고해야 함.

(2) 의결 내용

대표이사의 아파트 담보제공으로 인한 보상금을 철저히 관리해서 장기차입금과 차입금 이자 상환 계획등 보상금 사용계획을 설명하고 이기봉 이사가 동의하고 곽삼화 이사가 재청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 대표이사에게 보상금을 2027년 예·결산서에 반영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위임함.
- 첨 부 : 사회복지법인 은행골사람들 기본재산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 안내 공문

【 안건 3 : 기타 안건(공익법인신고 세무확인서)】

(1) 안건 개요

- 사회복지법인 은행골 사람들의 기본재산 및 후원금 수입 합이 5억이 초과 하여 2025년 국세청 공익법인 신고 시. 은행골사람들의 공익법인 신고서를 법인과 관련 없는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의 2인 세무 확인이 누락 되어 세무서에서 보완 지적으로 "세무법인 더택스"에서 부과세 포함하여 ₩2,200,000으로 세무확인을 받아 성남세무서에 제출하였음.

(2) 의결 내용

- 대표이사의 은행골사람들 공익법인 신고 시 해마다 세무확인 용역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정경미 이사가 동의하고 이상원 이사가 재청하여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의결하다.

==========

폐 회

==========

더 이상 심의할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장을 폐회하다.(회의 종료시간 : 12 시 00 분)

==========

날인 란

==========

이 회의록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날인함.

대표이사 : 박석주 (인)

이 사 : 황은희 (인)

이 사 : 이기봉 (인)

이 사 : 정경미 (인)

감 사 : 나종방 (인)

이 사 : 박진영 (인)

이 사 : 곽삼화 (인)

이 사 : 이상원 (인)

감 사 : 김승열 (인)